##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 : 김희정 • 서일준 • 이종배

박준태 · 김태호 · 이인선

임이자 • 곽규택 • 구자근

강대식 • 박정하 • 안상훈

송언석 · 김예지 · 이성권

정성국 · 조은희 · 이만희

한지아 · 조배숙 · 조지연

이헌승 · 서명옥 · 정연욱

의원(2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 나,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을 국회 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 질심사에 응하려고 하여도,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회기가 개시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 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집회에 관한 요청)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은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1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집회하지 않기를 국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6조의2(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집회에 관한 요청) 「형사소송
	법」에 따른 구속영장의 대상
	이 된 의원은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1조의2제2
	항에 따른 심문의 결과가 나오
	기 전까지 임시회가 집회하지
	않기를 국회에 서면으로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이
	를 각 의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